

Wong & Partners.

Member Firm of
Baker & McKenzie International

Malaysia

말레이시아 국가예산안 2022: 조세 부문 하일라이트

2021년 11월 2일

한글번역본



목차

국가예산안 2022	1
1. 소득세	1
1.1. 말레이시아 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1
2. 개인 소득세	2
2.1. 사회보장기금 납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2
2.2. 국민연금 납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2
2.3.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2
2.4. E-Sport 토너먼트 상금에 대한 세금혜택	3
2.5. 개인 소득세 인센티브 연장	3
2.6. 숙련도 향상 및 자기개발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연장	4
3. 법인세	4
3.1. <i>Cukai Makmur</i> 과세	4
3.2. 미처분 손실 이월 기간 연장	5
3.3.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분할 납부 유예	5
3.4. 추정과세 법인세 (Estimated Income Tax Payable) 수정	5
3.5. 자가 부담한 백신 부스터 접종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	5
4. 조세 인센티브 / 세금혜택	5
4.1. 그린테크놀로지 조세 인센티브 범위 확대	5
4.2. 전기차 산업 개발을 지원하는 조세 인센티브	6
4.3. 업스트림 석유산업의 Late-Life Assets 프로젝트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6
4.4. 디지털 에코시스템 가속화 제도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7
4.5. 사회적 기업을 위한 세금혜택	7
4.6. 사회적 소외자, 오랑아슬리, 장애우, 전과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 인센티브	7
4.7. 조세 인센티브 / 세금혜택 연장	8
4.8. 벤더개발 프로그램 하의 앵커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확대 및 연장	9
4.9. 장학금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확대 및 연장	9
4.10. 체계적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확대 및 연장	9



5.	인지세 업데이트	10
5.1.	개인과 개인 간 금융 (P2P 금융)의 대출 및 금융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감면.....	10
5.2.	상장사 주식 거래의 거래확인서에 대한 인지세 인상	10
5.3.	소액 / 연간 보험납입금에 대한 보험증서 혹은 Takaful Certificates에 인지세 감면	10
5.4.	인지세 감면 연장 (대출 조정 / 기업인수인계 관련 금융 계약서 및 서류)	11
6.	부동산양도세	11
6.1.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개인에 과세되는 부동산양도세율 검토	11
7.	간접세 업데이트	11
7.1.	소액 재화 (Low Value Goods)에 판매세 과세	11
7.2.	택배서비스(Goods Delivery Services)에 대한 서비스세 과세	12
7.3.	상장사 주식 거래와 관련된 브로커 서비스 비용에 대한 서비스세 감면	12
7.4.	특별 자진 신고 프로그램 도입	12
7.5.	간접세 감면 연장 (관광세, 엔터테인먼트세, 차량에 대한 판매세).....	13
8.	기타.....	13
8.1.	Windfall Profit Levy 인상 - 팜오일 생산 기업	13
8.2.	전자담배와 Vape에 사용되는 액상 및 젤에 소비세 과세	13
8.3.	가당음료에 과세되는 소비세 범위 확대	14
8.4.	장애우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4
8.5.	자발적 탄소시장 (Voluntary Carbon Market) 계획	14
9.	세금 관리	14
9.1.	모범납세자 인증서 (Tax Compliance Certificate).....	14
9.2.	납세자 번호 (Tax Identification Number)의 도입	15



국가예산안 2022

2021년 10월 29일에 말레이시아 재무부 장관은 'Keluarga Malaysia, Makmur Sejahtera (번영하는 말레이시아 가족)'을 테마로 하는 2022년 말레이시아 국가예산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Covid-19 팬데믹의 여파에서 사회경제적 회복을 꾀하고 있는 바, 예산안은 (1) 국민의 웰빙, (2) 기업의 회복, (3) 번영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은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 (2021 - 2025)을 보완하며, 국가 경제의 통합적인 회복과 기업의 회복력 및 국가의 보건시스템을 강화하는 제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금을 신규로 도입한다는 제안은 없었지만, RM100million를 초과하는 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의 성격으로 과세하는 *Cukai Makmur* 세금을 제안했고, 말레이시아에서 받는 역외 원천 소득은 비과세하는 기존의 과세 조치를 폐지하는 등 주목할만한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자료는 예산안의 내용 중 조세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소득세

1.1. 말레이시아 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말레이시아 거주자 은행, 보험, 해상 및 항공운송업을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로 받는 역외 원천 소득은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징수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말레이시아로 받는 역외 원천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제안했으며, 동 제안은 또한 국제 조세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금번 발표된 제안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말레이시아로 받은 역외 원천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며,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Wong & Partners 코멘트:

말레이시아로 받는 역외 원천 소득에 과세한다는 제안은 EU의 "Grey List" (조세회피 위험참고국)에 말레이시아가 포함된 사건에 기인합니다. 동 제안은 잠재적으로 위대한 말레이시아 역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 야기될 수 있는 이중비과세에 대한 EU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입니다.

금번 발표된 내용은 개인/법인, 기업 규모, 산업 부문에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제안의 시행을 결정할 때 정부는 친경제한경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EU의 우려에 초점을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과세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¹ "Grey List"는 국제 조세 표준에 모두 부합하지 않지만 세제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국가들입니다.

이런 조치는 말레이시아 납세자에게 세금 부담과 준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조항이 어떻게 작성될 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기적으로는 말레이시아 거주자 납세자는 현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역외 원천 소득을 말레이시아로 받는 것을 꺼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의 재투자 및 사업 확장으로 사용되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소득의 말레이시아 유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느 대상까지 과세될 지 제정법안이 발행되면 전체적으로 분석해야겠지만,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고심해야 합니다:

- (a) "받는 (received)"의 정의, 즉, 소득의 어느 시점을 말레이시아로 "받는"것으로 판단할 것인가?
- (b) 역외 원천 소득의 어떤 종류를 말레이시아 소득세로 과세할 것인가, 예, 소득의 특성, 활동 소득,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 그리고, 유해한 조세 관행을 방지하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c) 역외 원천 소득의 비과세 폐지는 기업 또는 개인 납세자에게, 아니면 모두에게 폐지될 것인가?

2. 개인 소득세

2.1. 사회보장기금 납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민간부문 근로자의 사회보장기금 ("SOCSSO") 납부를 장려하기 위해, SOCSSO 납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는 기존의 RM250에서 RM350으로 인상하여 과세년도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동 세금공제의 범위는 EIS 납부금을 포함합니다.

2.2. 국민연금 납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정부는 국민연금 ("EPF") 납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최대 RM4,000까지)의 범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과 임시직 경제 종사자들을 비롯한 자발적 공여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며, 과세년도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제안했습니다.

Wong & Partners 코멘트:

국가인구가족개발국 (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Development Board)은 말레이시아가 2030년에는 고령화국가로 진입이 예상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즉, 2030년에는 인구의 15%가 60세 이상입니다. 만약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족 계획/ 임신 계획 등이 미뤄진다면 말레이시아는 더 빨리 고령화 국가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안은 국민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하도록 저축을 장려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3.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국민의 건강과 웰빙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듯, 개인의 건강검진 비용 (최대 RM1,000)은

개인의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동 건강검진의 범위는 정신건강 검진, 그리고 등록된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혹은 상담심리사와의 상담서비스에 지출된 비용도 포함되도록 확대되며, 과세년도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2.4. E-Sport 토너먼트 상금에 대한 세금혜택

말레이시아의 e-sport 선수들의 성과를 인정하여, 명망있는 e-sport 토너먼트에서 수상한 상금은 소득세 공제됩니다.

Wong & Partners 코멘트:

말레이시아 국민이 게임에 지출한 비용은 2019년 동안 대략 RM 2.7 billion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면제 시점이나 "명망있는" 토너먼트의 기준을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젊은 토탈런트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환영할만한 제안입니다.

2.5. 개인 소득세 인센티브 연장

예산안은 기존의 개인 소득공제 /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연장
등록된 보육센터, 유치원 등록비는 RM3,000까지 소득공제.	소득공제 기간을 과세년도 2022, 2023까지 2년 더 연장.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 구매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가 최대 RM2,500까지 제공되며, 동 소득공제는 라이프스타일 소득공제 (최대 RM2,500)에 추가 제공.	소득공제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
개인연금스킴 (PRS)의 연납부금은 최대 RM3,000까지 소득공제.	소득공제 기간을 과세년도 2022-2024까지 4년 더 연장.
말레이시아로 사업운동을 옮긴 제조사 및 서비스사에게 15년 간 0%의 법인세로 과세하는 조세 인센티브. 주요직 (C-Suite)을 맡고있는 비거주자 개인의 소득에 대해 5년 간 15%의 고정세율로 과세 - 동 조세 인센티브는 기업 당 5명까지의 비거주자 개인으로 한정하며, 급여는 월 RM25,000 이상이며, 고정세율이 적용되는 5년 간 지속적으로 말레이시아에 개인납세자 지위를 유지해야 함.	비거주자 개인의 고정세율 소득세 과세 신청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며,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개발국 (MIDA)으로 제출.

특정 국내 여행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최대 RM1,000까지 소득공제.	2022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지출한 비용도 소득공제에 포함하도록 1년 연장.
근로자의 EPF 최소 납부율을 11%에서 9%로 감축.	감축된 납부율 적용은 2022년 6월까지 연장.

2.6. 숙련도 향상 및 자기개발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연장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일자리와 업무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코스에 지출한 수강비에 대해 소득공제는 기존의 최대 RM1,000에서 최대 RM2,000까지 인상되며 과세년도 2022, 2023까지 연장이 제안되었습니다(단, 교육 코스는 인적자원부 (Ministry of Human Resources)의 Department of Skills Development가 인정하는 코스만 해당).

또한, 전문적인 기관에서 승인된 교육 코스를 수강한 비용은 최대 RM7,00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3. 법인세

3.1. *Cukai Makmur* 과세

정부가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Covid-19 팬데믹 시기에 고소득을 낸 기업에게 *Cukai Makmur*로 알려진 일회성의 특별세를 과세한다고 제안했습니다.

*Cukai Makmur*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년도 2022에 과세됩니다:

- (a) 과세소득 RM100 million까지는 24%의 법인세율로 과세, 그리고,
- (b) 과세소득 밸런스에 33%의 법인세율로 과세.

Wong & Partners 코멘트:

동 특별과세율은 Covid-19 팬데믹 기간에 특별히 소득이 증가한 특정 산업 부문이 아닌 모든 산업 부문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Cukai Makmur*의 적용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수입을 보장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Cukai Makmur*의 도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향후 유사한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거나 다음 과세년도에도 연장되어 과세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면 외국인 투자의 감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업들도 과세율 인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미처분 손실 이월 기간 연장

현재는 과세년도 2019의 미처분 사업손실은 최대 7년 간 이월가능하고, 미처분 발란스는 무시 (disregard)됩니다. 예산안은 이 이월가능기간을 최대 10년의 과세년도까지 이월하도록 기간을 연장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과세년도 2018까지 미활용된 누적 손실은 과세년도 2025까지 이월이 가능했습니다. 예산안은 과세년도 2018까지 미활용된 누적 손실은 과세년도 2028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합니다.

동 제안은 소급적용되며, 과세년도 2019부터 시행됩니다.

3.3.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분할납부 유예

Covid-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을 돕기위해, 예산안은 MSME의 법인세 분할 납부를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3.4. 추정과세 법인세 (Estimated Income Tax Payable) 수정

모든 기업들은 2022년 10월 31일 이전 과세기간 (basis period)의 11번째 월에 추정과세 법인세를 수정하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5. 자가 부담한 백신 부스터 접종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

백신 부스터 접종 도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고용주에게 세금혜택이 제안되었습니다.

4. 조세 인센티브 / 세금혜택

4.1. 그린테크놀로지 조세 인센티브 범위 확대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을 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안은 조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적격 그린 테크놀로지 자산과 서비스의 매입 범위를 Rainwater Harvesting System ("RHS") 프로젝트 (말레이시아 그린테크놀로지 공사가 인증한 프로젝트)를 포함하도록 확대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a) 그린 투자세 공제 - 적격 RHS 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100%에 대해 투자세 공제, 법정 소득의 70%까지 상쇄 가능, 또는
- (b) 그린 소득세 면제 - 적격 RHS 서비스 활동으로 발생한 법정 소득의 70% 소득세 감면

이 인센티브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MIDA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4.2. 전기차 산업 개발을 지원하는 조세 인센티브

자동차 및 상용차, 전기 오토바이를 비롯한 전기자동차 ("EV")에 다음과 같은 조세 인센티브가 제안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인센티브 기간
현지에서 조립된 EV의 부품에 수입세 완전 면제.	2022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CKD EV에 소비세와 판매세 완전 면제.	2022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수입 CBU EV에 수입세와 소비세 완전 면제.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EV 충전 설비 할부 구입 혹은 구독 비용을 비롯한 설비, 렌탈, 구매 비용에 대해 최대 RM2,500까지 개인 소득공제 제공.	과세년도 2022와 2023

예산안은 EV 소유자에게 최대 100%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제안했습니다.

Wong & Partners 코멘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말레이시아는 선두적인 자동차제조허브국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말레이시아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대략 RM 48.6 billion이며, 244,000 규모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 부문입니다.

말레이시아의 EV 에코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들과 반도체 공장들이 있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크게 뒤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EV에 제안된 조세 인센티브는 EV 산업 부문에 투입되는 글로벌 투자가 증대되는 트렌드에 맥을 같이합니다. 동 인센티브가 현지에서 EV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안된 투자 인센티브의 범위는 현지에서 조립되는 EV의 부품 뿐 아니라 CKD EV의 부품에도 해당되므로, EV 산업 부문의 기업들에게는 말레이시아에 EV 제조설비 또는 EV 조립설비를 설립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교두보로 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3. 업스트림 석유산업의 Late-Life Assets 프로젝트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예산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사이에 수주한 Late-Life Assets ("LLA")의 생산물분배계약 (Production Sharing Contract, "PSC")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 (a) petroleum income tax를 15%의 세율로 과세.
- (b) 2년 간 가속자본공제 (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제공.

- (c) 설비 해체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이전 과세년도 2년까지의 소득과 소급 상쇄하고, 손실의 남은 발란스는 무시 (disregard).
- (d)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 감면.

4.4. 디지털 에코시스템 가속화 제도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디지털 에코시스템 가속화 제도 ("DESAC") 하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세 인센티브가 제안되었습니다:

- (a) 디지털 테크놀로지 제공자 - 신규 기업은 최대 10년 간 0%-10%까지 세율로 소득세 과세하고, 기존 기업은 신규 서비스 활동 혹은 신규 서비스 부문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 10%의 세율로 소득세 과세.
- (b) 디지털 인프라 제공자 - 최대 10년 까지 적격활동에 발생한 자본 지출에 100% 투자세 공제되며, 법정 소득의 최대 100%까지 상쇄.

동 인센티브는 2021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MIDA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5.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발맞추어, 사회적 기업의 기금 모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이 제안되었습니다. 즉, 최대 3년의 과세년도까지 적법하게 인가된 사회적 기업의 모든 소득은 소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면제는 재무부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고, 동 기간에 Yayasan Hasanah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4.6. 사회적소외자, 오랑아슬리, 장애우, 전과자, 특정 여성 등 고용인센티브

JaminKerja 제도를 통해 고용을 진행하는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RM 2 billion의 예산이 배정되어 300,000인의 취업을 달성시키는 목표로 지속됩니다.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인력의 고용 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a)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던 말레이시아 국민
- (b) 오랑아슬리 (원주민)
- (c) 장애우
- (d) 전과자
- (e) 365일 이상 무직 상태인 여성

(f) 싱글맘

(g) 주부

4.7. 조세 인센티브 / 세금혜택 연장

기존의 인센티브 / 세금혜택의 연장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	연장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최소한 30%까지 임대료 할인을 2021년 12월까지 제공한 건물주/사업장임대주는 임대료를 삭감해 준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특별 세금감면을 제공.	인센티브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어 2022년 1월에서 2022년 6월까지 제공한 임대료 삭감 비용에도 연장 적용.
사업장의 레노베이션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최대 RM300,000 까지 세금감면을 제공	인센티브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Safe@Work에 등록된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기업이 Employees' Minimum Standards of Housing, Accommodations and Amenities Act 1990에 준하여 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해 지출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RM50,000까지 세금감면을 제공.	인센티브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임대료 지출비에도 연장 적용.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립된 신규 MSME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향후 3년의 과세년도 동안 과세년도 당 최대 RM20,000까지 소득세 리베이트를 제공.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설립된 MSME와 신규 운영하는 MSME 포함.
재투자 공제금과 특별 재투자 공제금을 모두 소진한 기업에게 3년의 추가 재투자 공제금을 과세년도 2022까지 제공(사업 확장, 현대화, 자동화 혹은 제조업 부문 및 일부 농업 부문으로 사업 다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추가 재투자 공제금의 제공 기간이 과세년도 2024까지 2년 더 연장.
과세년도 2022까지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개최하는 기업은 법정소득의 50%에 소득세 감면: (a) 관광, 예술, 문화부 (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가 승인한 예술 및 문화 활동 (b) 청년 및 스포츠부 (Ministry of Youth and Sports)에서 승인한 국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대회	인센티브 기간이 과세년도 2025까지 3년 더 연장.

과세년도 2021까지 현지에서 조립된 관광버스를 매입하는데 발생한 자본 지출에 대해 20%의 초기 공제와 40%의 연간 공제를 클레임할 수 있는 가속감가상각 (ACA)	인센티브 기간이 과세년도 2024까지 3년 더 연장.
---	-------------------------------

4.8. 벤더개발 프로그램의 앵커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확대 / 연장

벤처개발 프로그램(VDP)은 현지 부미푸트라 벤더를 육성하고자 예산안 2014에 처음 소개되었고, 적격 앵커기업이 다음과 같은 지출한 비용에 이중세금공제 (double tax deduction)가 제공됩니다:

- (a) 제품 개발, 연구개발, 혁신 및 퀄리티 개선에 지출된 비용
- (b) 벤더기업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출된 비용
- (c) 벤더기술 훈련, 역량 강화, 린경영 시스템과 재무관리 시스템에 지출된 비용

동 세금 인센티브의 자격을 얻고자하는 앵커기업은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혹은 기업개발, 협동조합부 (Ministry of Entrepreneur Development and Cooperatives)와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특정 기간동안 반드시 체결해야 하고, 이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지 벤더의 역량을 더욱 육성하기위해 예산안은 과세년도 당 이중세금공제 한도를 RM300,000에서 RM500,000으로 인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4.9. 장학금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확대 및 연장

디플로마, 학부 학위, 석사 학위, 박사 학위에 있는 학생에 장학금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현재 세금혜택이 제공됩니다.

예산안은 동 세금공제 혜택이 기술 및 직업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에도 이중세금공제를 제공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동 조세 인센티브는 과세년도 2025까지 4년간 연장됩니다.

4.10. 체계적 인턴쉽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확대 및 연장

체계적 인턴쉽 프로그램 ("SIP")에 대한 기존의 조세 인센티브는 Tal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이 승인한 일부 SIP를 운용하는 기업의 적격 지출 비용에 이중세금공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은 석사 학위, 전문자격, 말레이시아 기술인자격 레벨1과 레벨2에 속한 학생도 포함하도록 확대되며, 과세년도 2025까지 4년 더 연장된다고 제안했습니다.

5. 인지세 업데이트

5.1. 개인과 개인 간 금융 (P2P 금융)의 대출/금융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감면

P2P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에 대한 MSME와 투자자 간 대출/금융계약서는 현재 0.05 -0.50%의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MSME이 대안적인 파이낸싱을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MSME와 투자자간의 P2P 대출/금융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가 5년 간 100% 감면됩니다. 단, 동 세금혜택은 말레이시아의 증권위원회에 등록된 P2P 파이낸싱 플랫폼을 통한 P2P 파이낸싱에만 해당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P2P 대출/금융계약서에만 해당됩니다.

5.2. 상장사 주식 거래의 거래확인서에 대한 인지세 인상

Bursa Malaysia에 상장된 주식 거래의 거래확인서 (credit note)에 과세되는 인지세 과세율이 기존의 0.1%에서 0.15%로 인상 (RM1,000거래 시 RM1.50에 해당), 그리고, 각 거래확인서에 대해 과세되는 인지세 최대치를 RM200로 제한하는 방침의 폐지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Wong & Partners 코멘트:

최대치 혹은 감면없이 과세되는 동 개정은 대량의 주식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에게 상당한 거래 비용의 인상을 야기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장사 주식 거래와 관련된 브로커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 감면 (아래 7.3을 참조)은 주식 거래를 권장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예산안의 이 두 부문을 같이 놓고 볼 때, 정부의 의도는 소규모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활동을 증진하면서도, 인지세 과세 최대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세수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기관투자자와 자산가인 개인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3. 소액 / 연간 보험납입금에 대한 보험증서 혹은 Takaful Certificates에 인지세 감면

보험금 혹은 *Produk Perlindungan Tenang*의 takaful 증서에 대한 연간 납부금이 RM100 미만인 경우 현재 인지세 감면이 제공됩니다. 예산안은 동 인지세 감면이 적용되는 연간 납부금을 RM100에서 RM150로 인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타 다른 보험 혹은 takaful certificates² 에도 인지세 감면을 제안했는데, 개인의 경우 연간

² 동 인지세 감면이 적용되는 보험 및 takaful 증서는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사업 재해 보험, 개인상해보험, 여행자보험, 책임보험, 기관보험 (Engineering Insurance)입니다.

납부금이 RM150미만, MSME의 경우 연간 납부금이 RM250까지 인지세 감면을 제안했습니다. 동 인지세 감면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보험 및 takaful 증서에 해당됩니다.

5.4. 인지세 감면 연장 (대출 조정 / 기업인수인계 관련 금융계약서 및 서류)

예산안은 특정 인지세 감면 혜택 기간의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연장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대출/파이낸싱 계약서의 대출 조정에 대해서 100% 인지세 감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적격 계약서에 대해 인지세 감면이 1년 연장.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MSME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에 대해 인지세가 감면됩니다: (a) 부동산 매각 및 임대 계약서 (b) 주식양도증서, 양해각서(MoU) (c) 대출 혹은 파이낸싱 계약서 (d) 최초 렌탈 계약서	2021년 7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기업개발, 협동조합부 (Ministry of Entrepreneur Development and Cooperatives)에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서류에 대해 인지세 감면이 1년 연장.

6. 부동산양도세

6.1.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개인에 과세되는 부동산양도세율 검토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개인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매각과 부동산기업의 주식 매각 시 수익분에 과세되는 부동산양도세("RPGT")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6년 이후 매각한 경우에는 기존의 5%로 과세되는 RPGT 과세율을 0%로 감축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 간접세 업데이트

7.1. 소액 재화에 판매세 과세

예산안은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해외에서 항공배송으로 말레이시아의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소액 재화 ("LVG", 해외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RM500 이하 제품)에 판매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액재화의 경우 그동안 세금감면이 제공되었었습니다.

동 제안 내용은 판매세법 2018을 개정함으로써 도입될 것이며, 말레이시아의 소비자에게 소액 재화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말레이시아 혹은 해외의 판매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 등록하여 판매세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7.2. 제품 배달서비스(Goods Delivery Services)에 대한 서비스세 과세

예산안은 택배 및 제품 배달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이커머스 플랫폼을 포함)가 제공하는 제품 배달서비스에 서비스세를 과세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단, 음식 및 음료 배달서비스 및 운송서비스는 제외됩니다. 동 제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제안되었습니다.

Wong & Partners 코멘트:

온라인 배달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제품 배달서비스에 서비스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부의 세수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웰빙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상반되는 조치입니다. Covid-19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대면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구매는 여전히 권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운송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될 지 여전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정부는 관련 법의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이 조치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7.3. 상장사 주식 거래와 관련된 브로커 서비스 비용에 대한 서비스세 감면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인 Bursa Malaysia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브로커 서비스는 제공자, 수혜자 모두 서비스세가 감면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제안했습니다.

7.4. 특별 자진신고 프로그램 도입

예산안에는 관세청이 간접세에 대한 특별 자진신고 프로그램 ("**SVDP**")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첫번째 단계에서는 페널티를 100% 면제해주고, 2단계에서는 페널티를 50% 감면해준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검토하게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Wong & Partners 코멘트:

동 세금감면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지 혹은 일부 사례들에게만 적용될 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SVDP를 통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그리고 시행일도 곧 발표되길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예산안 2019로 도입되었던 직접세에 대한 SVDP의 예를 보면, 이 간접세에 대한 SVDP의

성공여부는 SVDP에 참여한 납세자의 동일 이슈에 대해 관세청이 향후 세무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5. 간접세 감면 연장 (관광세, 엔터테인먼트세, 차량에 대한 판매세)

특정 간접세 감면은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존	연장
관광세법 2017에 등록된 숙소 제공 사업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광세 감면 적용.	감면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시네마, 놀이공원, 무대공연,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경기 등 오락시설의 입장료에 대해 엔터테인먼트세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감면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자동차 (SUV 및 MPV 포함)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매세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a) CKD 자동차에 대해 100% 판매세 감면, 그리고, (b) 수입된 CBU 새차, 중고차에 50% 판매세 감면	감면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어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

8. 기타

8.1. Windfall Profit Levy 인상 – 팜오일 생산 기업

Windfall profit levy로 과세되는 팜오일 가격을 서말레이시아는 RM3,000/metric ton (현재 RM2,500), 사바와 사라왁은 RM3,500/metric ton으로 (현재 RM3,000) 인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사바와 사라왁의 레비 세율은 기존의 1.5%에서 3.0%로 인상하여 서말레이시아와 동일하게 과세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동 인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8.2. 전자담배와 vape에 사용되는 액상 및 젤에 소비세 과세

예산안은 전자담배와 vape에 사용되는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과 젤도 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며, RM1.20/ml로 과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니코틴 미함유 액상과 젤의 소비세 과세 임계치를 RM0.40/ml 에서 RM1.20/ml로 인상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니코틴 함유 액상/젤, 니코틴 비함유 액상/젤 모두 같은 소비세율로 과세됩니다.
제안된 소비세 확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8.3. 가당음료에 과세되는 소비세 범위 확대

말레이시아 국민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안에는 가당음료에 대한 소비세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고 제안되었습니다. 즉, 2 in 1 혹은 3 in 1과 같은 초콜렛 혹은 코코아, 맥아, 커피, 차와 같은 음료를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품목 범위 18.06, 19.01, 21.01로 분류되는 음료에 대해 RM0.47/100g으로 소비세가 부과된다고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설탕 함유 기준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품목번호	설명	가당 기준
18.06	초콜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제품	33.3g per 100g
19.01	맥아 함유 제품	
21.01	혼합된 커피, 차 함유 제품	

동 소비세 확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8.4. 장애우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정부는 2022년 동안 장애우가 소유주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정부가 모두 부담한다고 제안했습니다.

8.5. 자발적 탄소시장 (Voluntary Carbon Market) 계획

빠르면 205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탄소중립국가로 만들겠다는 말레이시아 수상의 정책적 의지에 발맞추어, 자발적 탄소시장 ("VCM") 계획이 Bursa Malaysia 주도로 시작된다고 제안했습니다. VCM은 그린자산 소유자들과 탈탄소 실천 기업들 간의 탄소거래권 (carbon credit) 거래라는 자반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9. 세금 관리

9.1. 모범납세자 인증서 (Tax Compliance Certificate)

예산안은 말레이시아 국세청 (IRB)이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선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인증서 (Tax Compliance Certificate)을 발행하는 조치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9.2. 납세자 번호 (Tax Identification Number)의 도입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안에서 18세 이상의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 및 기업에게 납세자번호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발급을 제안했었습니다. 재무부는 2022년부터 TIN의 시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자료는 영문으로 작성된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가장 정확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여 영문인 원문을 다운로드받아 참고하십시오.

Wong & Partners.

Member Firm of
Baker & McKenzie International

A Truly Global Leader

Wong & Partners prides itself on being a progressive firm that is committed to providing global standards of quality. As a member firm of Baker McKenzie International, Wong & Partners is part of an extensive global platform in the legal profession, with 77 offices in 46 countries. Our difference is in the way we think, work and behave – we combine an instinctively global perspective with a genuinely multicultural approach, enabled by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nd yielding pragmatic and innovative advice. We also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of business the world over and bring the talent and experience needed to navigate complexity across practices and borders with ease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주시시오:

Adeline Wong

Partner

adeline.wong@wongpartners.com

Tel: +603 2298 7880

Yvonne Beh

Partner

yvonne.beh@wongpartners.com

Tel: +603 2298 7808

Lisa Yeoh

Associate

lisa.yeoh@wongpartners.com

Tel: +603 2299 6458

기소예

부장, 한국기업지원

soyeh.ki@wongpartners.com

Tel: +603 2298 7903

Level 2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Kuala Lumpur 59200

Malaysia

Tel: +603 2298 7888

Fax: +603 2282 2669

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is a member firm of Baker & McKenzie International, a Swiss Verein with member law firms around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common terminology used in professional service organizations, reference to a "partner" means a person who is a partner, or equivalent, in such a law firm. Similarly, reference to an "office" means an office of any such law firm.